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041

제출일자 : 2014. 10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폐지이유

기존의『도시공원법』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점용 및 허가를 관리토록 하여 『대구광역시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 운영 하였으나 『도시공원법』이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로 전부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고 상위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9. 5. ~ 9. 25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.